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공고 제2025 - 16호

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기간제근로자(연구원, 고고학 분야) 신규채용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전형 공고

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에서 기간제근로자(연구원/고고학분야) 신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합격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3월 25일

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장

1.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(고고학 분야)

ㅇ 고고(관북)-01, 고고(관북)-02, 고고(관북)-03

ㅇ 고고(왕궁)-01, 고고(왕궁)-02, 고고(왕궁)-03

2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

ㅇ 일 시: 2025. 4. 1. (화), 13:30

ㅇ 면접장소: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소회의실(2층)
[충남 부여군 규암면 충절로 2316번길 34(외리 산 1-1)]

ㅇ 대기장소: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세미나실(1층)

3 기타사항

ㅇ **서류전형 합격자는 붙임의 서류[붙임1, 붙임2]를 작성하여 면접당일 제출**하시기 바랍니다.

ㅇ 서류전형 합격자는 **반드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하나)을 지참하고, 면접시작 20분전(13시 10분)까지 대기실로 입실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수험표 당일 교부

ㅇ 지정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

ㅇ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ㅇ 면접일정 및 장소 등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개별 연락과 홈페이지에 변경 안내 예정입니다.

ㅇ 감염병 방지를 위하여 응시자는 발열(37.5도 이상)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ㅇ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채용 담당자(041-830-5675)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 최종합격자 발표 : 2025년 4월 2일 (수) 예정

- 국가유산청 및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

붙임 1.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
2.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. 끝.

<붙임 1>

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

성 명	생년월일

목 록	해당여부
① 피성년후견인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.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
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5. . .

성명 : (서명)

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

<붙임 2>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**비위면직자등**은 **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**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**형사처벌**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**해임요구**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1. **공직자**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*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	해당 □ 비해당 □
2. **'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'**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 *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* **(예시)**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: 비해당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: 해당	해당 □ 비해당 □
3-1. **해당 부패행위**로 **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**된 사실이 있는지	해당 □ 비해당 □
3-2. 위 **퇴직일**(당연퇴직 · 파면 · 해임일)로부터 **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**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)	해당 □ 비해당 □
4-1. 해당 부패행위로 **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**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	해당 □ 비해당 □
4-2. 그 형의 **집행이 종료된 날**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**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**(5년 내)	해당 □ 비해당 □
4-3. 권익위법('16.3.29. 제14145호로) 시행('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	해당 □ 비해당 □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	해당 □
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	해당 □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2025년 월 일

생년월일 . . . 지 원 자 (서명)

년 월 일